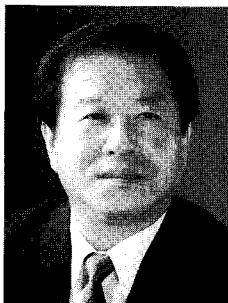


논 단

감가상각의 의의와 효율

1. 감 가
1) 발생원인에 의한 분류
2) 발생상태에 의한 분류
3) 발생경과에 의한 분류
2. 감가상각
1) 의 의
(1) 내용연수
(2) 원 가
(3) 잔존가격
2) 계산방법
(1) 정 액 법
(2) 정 률 법
(3) 산 고 법
3. 감가지산
4. 감가상각효율과 감가상각 충당금
1) 감가상각 효율
2) 감기상각 충당금
5. 감가충당금계정
1) 감기충당금
2) 감기충당금 계정
6. 감가수정



김 종 우
유 창 물 산 대 표

1. 감 가

감가(減價 : abatement)란 값을 줄이는 것으로서, 회계학상 고정자산(固定資產)의 경제적 가치의 감소를 말한다.

감가의 두 가지 기본형태인 가치이전적 감가와 재산적감가가 회계기술(會計技術)에서는 경상적(經常的)감가와 우발적(偶發的)감가로 구분된다. 그것은 기업가의 입장에서 볼 때 투하자본의 소모(消耗)인 이상, 가치이전적감가(價值移轉的減價)나 재산적 감가가 다같이 자본의 회수(回收)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그러한 형식적인 분류가 중요한 의의를 갖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감가의 성질에 관계없이 감가발생(減價發生)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경상적 감가로서 각 회계기간에 분담시키고,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의 감가가 발생한 것인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은 우발적 감가로서 비경상적(非經常的) 처리의 대상이 된다. 상각(償却)은 보상하여 갚아준다는 뜻이며, 여기서는 감가상각의 준말로 쓰인다. 그리고 회계학에서 고정자산의 감가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발생원인에 의한 분류

물리적 감가에서는 사용 또는 작업에 의한 소

모(消耗)와 시간의 경과에 의한 자연적인 폐퇴(廢退), 그리고 재해(災害)등에 의한 우발적인 소모가 있다. 그리고 기능적 감가에는 기술의 진보에 의한 구식화(舊式化), 경제사정의 변화등에 의한 부적당화(不適當化)등이 있다.

2) 발생상태에 의한 분류

경영활동 수행상 경영적으로 생기는 감가인 통상(通常)감가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우연히 생기는 감가인 우발감가가 있다.

3) 발생경과에 의한 분류

감가발생에 의하여 농산물에 가치가 이전(移轉)되었다고 인정되는 가치이전적 감가와 생산물에 가치가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는 재산적(財產的)감가가 있다.

2. 감가상각

1) 의 의

감가상각(減價償却 : depreciation)이란 토지를 제외한 고정자산(固定資產)에 생기는 가치의 소모를 결산기마다 계산하여, 그 자산가격을 감소해 가는 회계상의 절차이다. 구칭으로는 감가소각(消却) 혹은 원가소각이라고도 하는데, 즉 고정자산의 경제가치소모에 대한 계산방법을 말한다. 즉, 고정자산은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으나 그 가치가 점차 감소하여 가는 것이며, 또한 재고조사를 할 수 있는 자산(資產)처럼 수량적인 감소가 생기지 않으므로, 그 가치의 감소를 기말(期末)에 재고조사 하듯이 실지검사에 의해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정자산의 가치감소에 의해 생기는 손실은 내용연수(耐用年數 : durable years/service life) 계산이란 방법을 취

하지 않으면 안된다.

내용연수란 기업에 있어서 어느 고정자산이 사용될 수 있는 연수(年數)를 미리 추정하여, 고정자산의 원가(原價)에서 잔해물(殘骸物)로서의 폐물(廢物)가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소모금액을 이 내용연수중에 각 사업연도별로 나눈 손실을 말한다. 이 내용연수에 의한 계산이 감가상각 계산인 것이다.

감가상각 계산의 요인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가 있다.

(1) 내용연수

내용연한(年限)이라고도 하며, 고정자산의 이용 가능연수를 말한다. 감가상각의 주요한 기준이 된다.

(2) 원가(原價) 또는 미상각자가(未償却殘價)

상품에 투자한 액수가 원가인데, 팔 상품을 만들거나 사들인 값외에 그에 든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시가(時價)에 대(對)해 쓰이는 취득원가(取得原價)는 취득한 상품이나 자산의 실제구입가격 또는 실제 제조원가를 말한다. 또한 재고자산(在庫資產) 평가방법의 하나로 원가법(原價法)이 있는데, 이것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를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다. 이와 더불어 원가주의(主義)는 회계기록에서 기업의 자산 및 비용을 그 취득에 필요한 원가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저가주의와 대비된다.

(3) 잔존가격(殘存價格)

잔존가액(價額)이라고도 하는데, 자산의 비용화(費用化)가 끝난 시점에 있어서의 처분 가능가액을 말한다. 그리고 몇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있는 기계나 시설의 비율을 나타내는 곡선이 잔존곡선(殘存曲線 : survivor curve)이다.

2) 계산방법

감가상각 계산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실무적으로 사용되는 것에는 정액법(定額法)과 정률법(定率法)의 두 가지인데 특수한 경우에는 산고비례법(產高比例法)이 사용되고 있다.

(1) 정액법(definite amount method)

매기(每期) 정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정액법의 계산방식은 $\frac{\text{원가} - \text{잔존가격}}{\text{내용연수}} = \text{상각액}$ 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극히 상식적인 방법으로 매사업 연도의 상각액이 균일액이나 정액(定額)으로 되는 점에 특징이 있다.

미국에서는 이 방법을 직선법(直線法)이라고 하는데 건물이나 선박과 같이 단위는 크고 수(數)가 적은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 방법이 적합한 것이다. 즉 각 회계년도마다 등액(等額)으로 상각하는 방법이며, 정기적인 균등액(均等額) 상각이 특색을 이루고 있다.

(2) 정률법

정률법이란 고정자산의 미상각잔가(未償却殘價)에 어떤 정률을 곱하여 매 사업연도의 상각액을 산출한다. 고정자산의 미상각(未償却)잔고에 매기의 일정률을 곱하여 계산한 액수를 상각하는 방법이며, 체감(遞減)잔고법이라고도 하는데 그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1 - \text{연수} \sqrt{\frac{\text{잔존가격}}{\text{원가}}} = \text{정률}); 1 - \sqrt{\frac{100}{1,000}} = 0.20567$$

잔존가격을 원가의 1할, 내용연수를 10년으로 했을 때의 정률은 0.20567이 된다.

미상각잔액이란 원가에서 그 사업연도까지의 상각액을 공제한 가격인 것이다. 즉, 미상각잔액 = 원가 - 그 사업연도까지의 상각액. 고정자산의 미상각잔가는 상각이 진행됨에 따라 해마다 감소

한다. 이 감소하는 금액에 일정한 율(率)을 곱해서 감가상각액을 산출하는 것이므로 매년도의 감가상각액은 차차 체감된다. 그래서 정률법을 체감상각법이라고도 하는 수가 있다. 즉 자산이 새것일 때의 다액의 상각을 행하는 것이 되므로

ⓐ 내용연수 도중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폐기되었을 때에도 비교적 다액이 상각되어 있어 장부가격(帳簿價格 : book value)이 적어졌기 때문에 폐기손실(廢棄損失)이 적은 것이다.

ⓑ 자산이 새것인 동안은 수선 및 유지비가 적으므로 이때에 다액을 상각하는 것은 수선비와 상각비의 합계인 고정자산비용에 의해서 사업연도적 평균이 구하여지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이를 특징보다도 정률법이 정액법에 비교하여 계산이 용이하다는 것이 중요하다. 즉 사용도중 부가(附加)개량등의 자본지출에 있어 원가의 정정(訂正)을 필요로 할 때에도 정률법을 계산요인으로 하지 않으므로 단지 자본지출액을 미상각잔가에 가산하는 것으로 상각계산을 속행할 수 있는 것이다.

(3) 산고법

산고(產高)는 농작물등의 생산량(生產量)을 말하며, 산액(產額)이라고도 한다.

산고법(產高法)은 산고비례법이라고도 말하며 생산수량에 비례해서 상각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이것은 목적인 고정자산 사용에 견딜 수 있는 동안의 용역량(用役量), 즉 생산량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실무적으로는 광산업의 광구(礦區), 또는 그 부대설비에 대해서 행하여진다. 즉 매장가채광량(埋藏可採礦量)을 추정하여 매 사업연도의 채굴수량과 매장량과의 비례에 의하여 상각액의 계산을 한다. 이와 같이 광산이나 유전(油田)과 같이 개발·채취함에 따라 소모되고 대체(代替)가 불가능한 자산을 소

모성자산이라 하는데, 이와 같은 소모성자산(消耗性資產 : current/liquid/wasting assets)의 감가상각을 디프리시에이션(depreciation)이라고 부른다. 감가상각 계산은 고정자산의 소모금액을 매 사업연도에 가급적 균등하게 나누어 주는 계산인 것이다. 만일 다른 계산에 의해서 비용이 균등하게 계산된다면 감가상각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

3. 감가자산

회계학상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자산(資產)이다. 즉 건물·공구·비품·상표권·영업권등의 고정자산을 말한다.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은 영구히 사용할 수 없고 그 사용가능연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그 취득원가(取得原價)에서 잔존가액(殘存價額)을 차감한 금액을 그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서 매 회계기간에 수익이 부담할 비용으로 배분(配分)해 주어야 한다. 감가자산은 유동자산이 아니고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고정자산에서 그 대상을 찾게 된다. 그러나 장기투자나 토지는 회계학상 감가의 특징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자산이 되지 않는다. 예컨대, 유형고정자산중에 설비자산(設備資產)으로서는 건물, 기계장치, 집물(什物), 차량 및 선박등이 있고, 자연자원자산(自然資源資產)으로는 삼림, 광산과 유전 등이 있다. 또 무형고정자산으로는 특허권(特許權), 저작권(著作權), 수리권(水利權), 어업권, 상표권(商標權)과 영업권 등이 있다. 그러나 현행세법의 <고정자산 감가상각계산규정>에 감가자산으로는 건물, 구축물(構築物), 선박, 어구(漁具), 어선용구(漁船用具), 차량, 운반구(運搬具), 공구(工具), 기구(器具)와 비품과 같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특허권, 상표권, 미장권(美匠權), 실용신안권(實用新案權), 수리권, 어업권, 영업권, 시험연구비(試驗研

究費)와 개발비(開發費)등을 규정하고 있어, 이 외의 것에 대한 감가상각은 세법상(稅法上)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4. 감가상각효율과 감가상각 충당금

1) 감가상각 효율(效率 : depreciation rate)

어떤 기간의 감가상각비 총계를 순매출액(純賣出額)으로 제하여 산정하는 비율이다. 이 분자와 분모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이 비율이 항상 크게 변동하지 않을 때는 순 매출액의 증감에 따라 감가상각비가 증가하는 것이며, 상각정책(償却政策)이 매출액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것에 의한다. 그러므로 이 비율로서 상각정책 당부(當否)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또 이 비율은 감가상각비(減價償却費 : depreciation expense) 비율과 함께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2) 감가상각 충당금

감가상각의 계산에 있어 고정자산(固定資產)의 최초의 취득가격을 계정(計定)에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그 고정자산계정의 대변(代邊)에 상각액을 기입하지 않고 고정자산계정은 원가(原價) 그대로 두고 감가상각 충당금계정을 새로 만들어 그 대변에 기입하는 상각액이다. 이 계정은 소극적 평가계정(評價計定)과 같으며 이 방법을 간접법(間接法)에 의한 감가상각이라 한다. 단 대차대조표에는 고정자산에서 공제하는 형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5. 감가충당금계정

1) 감가충당금

유형고정자산을 상각(償却)할 때, 취득가액(取

得價額)은 그대로 두고, 별도로 계정을 만들어 누적해 가는 상각액이 감가충당금(充當金)이다. 고정자산의 취득가격은 그 자산의 사용기간동안 소모될 비용의 선급(先給)이라고 생각하며, 결산 할 때는 비용화(費用化)해야 하며 투자자산은 이에서 제외된다. 무형자산의 상각은 그 때마다 장부가액(帳簿價額)에서 공제하는 직접법(直接法)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2) 감가충당금 계정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을 할 때 고정자산은 원가 그대로 두고, 매기(每期)의 감가상각액은 별도로 감가충당금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그 대변(貸邊)에 기입하고 감가상각이 끝났을 때, 이 계정의

잔액과 고정자산계정의 잔액을 대체하여 쌍방을 소멸시키는 계정이다. 고정자산의 취득가격과 상각누계를 알 수 있고, 또 미상각장부잔액(未償却帳簿殘額)을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계정은 건물감가충당금계정, 기계감가충당금계정 등으로 분류되며, 무형자산(無形資產 : intangible assets / property)을 위한 감가충당금계정은 설정하지 않는다.

6. 감가수정

재산의 감정(鑑定) 평가에서 물리적 감가·기능적 감가·경제적 감가를 고려하여 적정한 감가액이 되도록 하는 절차를 감가수정(修正)이라 한다. 전안

전기용품 표시에 관한 규정 안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한 1종 및 2종 전기용품 제조 및 수입판매업자는 전기용품의 표시에 관한 규정(공업진흥청고시 제92-254호, 개정 '92. 6. 4)에 의한 표시사항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용품 사후관리결과 일부 전기용품의 표시사항이 동 규정에 부적합한 사례가 있어서 소비자의 불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용품 제조 및 수입판매업체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사항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표시위반사례 :
- 제조년월일 미표시 - 옥내외용 구분 미표시
 - 정격소비전력 미표시 - 한글 미표기
 - 상 미표시 - 접지 미표시 등
- (정격전압110V초과제품)